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 11. 5. 제 천 시 장
- 회 부 일 : 2009. 11. 6.
- 상 정 일 : 2009. 11. 12.(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가. 제안이유

-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 학교급식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학교급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대상을 영유아에게 확대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 본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현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학교 45개소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쌀과 잡곡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5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지원대상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 : 45개소
 - 고등학교(7교), 중학교(13교), 초등학교(24교), 특수학교(1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유치원 : 30개소
 - 학교병설유치원(24원), 사립유치원(6원)
- ▶ 지원예산 : 684,841천원 / 2009년

□ 확대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59개소
- ▶ 추가소요예산 : 86,378천원 / 2010년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급식대상학교가 50여개소 6억8천만원이고, 확대지원 보육시설이 59개소임에도 확대지원액이 8천여만원인 이유는?(김병창 위원)
-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도계획은?(최종섭 위원)
-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권건중 위원)
- 지원대상이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은 기관이 아님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의견은?, 제4조제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유영화 위원)

나. 답변요지 <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

- 확대대상 보육시설은 많은 편이나, 개소당 인원이 15-20명정도로 전체적인 인원이 적기 때문임.
- 학교별 급식지원 형태가 조금씩 다른편이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작년 학교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했으며, 우렁이종패 지원등 우수농산물과 연계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또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조항등 제4조 조항을 명백하게 하게 위하여 수정이 필요함.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내 용

-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
-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 안 제4조중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시 관내에 소재하는”
 - 안 제4조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조문대비표 1부. 끝.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394
------	------

제안연월일 : 2009. 11. 12.

제안자 : 김명섭 위원외 3인

1. 수정이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교육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안 제4조중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를 “시 관내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를 “시 관내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시 관내</u>에 소재하는 <u>교육기관으로서</u>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 	<p>제4조(지원대상) <u>시 관내</u>에 소재하는</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p>(삭제)</p>